

춘천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4나6842 판결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4나684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3가단1145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1. D

2. E

3. F

피고, 항소인4. G

피고, 피항소인5. 망 H의 소송수계인

가. U

나. V

다. W

6. I

피고, 항소인7. J

변론 종결2015. 11. 27.

판결 선고2016. 1. 8.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3가단1145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J,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D, E, F, I, U, V, W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J, G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D, E, F, I, U, V, W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D는 강원 화천군 L대 608m²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1, 지, 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②) 부분 8m지하상사면과부토전장교를 같은월 1회한교사제 608,01중별지 제1필을 출처로 연결한 설내

③ 분별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점포 및 같은 도면 표시 $\text{ㅎ1, 72, L2, C2, L, C'}$, '의 각 점을

⑤, 부본 연결을 성내레드하목, 전방고를 각각 철거하여 천공 위대 608m²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72, 0, 3, 근2,

⑥,부분,40위²각지장을원해물편결한쌀내같은도면표시ㄴㄴ,ㄷ,ㄹ,ㄱㄱ,ㄴ니의각점을순차로

④ 기본 설계조건 및 설계치: 도로교통량 1,000대/일, V, W은 강원 화천군 L대 608m² 중 별지

제1부분 39세 처상세멘트벽돌조 첨뿔 말 접을 준천로 연결한 선배 머, 흥, 기의 각 점을 순차로

⑤ 결핵 선이 매를 갠 아래쪽 목 피창근의 강원동역차근지 본래 160을 m 각 줄 별 하 게 1 두 면 표시 $\Delta, \nabla, \in, \square, 2,$

⑧ **부록 정음순서로** 아래에 표시한 점포 및 같은 도면 표시 $\alpha, \alpha_2, \epsilon, \pi, \theta$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⑩, 부분 퇴창을 생략한 경우의 제정된 청구항들은 망심에서 소송수계에 따라 망 H에 대한 청구를 위와 같이 소송수계인 피고 U, V, W에 대한 청구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D, E, F, U, V, W, I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G, J

제1심판결 중 피고 G, J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강원 화천군 L대 60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①. 부면 8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부분 3m 지상 세멘트돌조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②. 부면 8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부분 3m 지상 세멘트 돌조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③. 부면 8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④. 부면 8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⑤. 부면 8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⑥. 부면 8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U, V, W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1/3씩 이를 상속하고, 당심에서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⑦. 부면 8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⑧. 부면 8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② 건물은 '이 사건 점막 및 철거를 위한 차하'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J은 피고 I로부터 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화천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피고들이 위 기초 사실 나항부터 바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들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여, 그 건물부지인 토지를 인도하고, 임차인인 피고들은 해당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D, E, F, U, V, W, I(이하 '피고 토지임차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아래 나항 인정 사실 8)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건물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고, 피고 G은 피고 F으로부터, 피고 J은 피고 I으로부터 각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 사실

- 1) 분할 전 강원 L 대 396평(1998. 4. 15.경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 및 N 대 659 m²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59년경부터 O시장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 2) 망 M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1. 12. 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M가 사망하자, 망 P 및 원고 B, A는 1998.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3분의 1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3)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망 P 지분에 관하여 2008. 4. 22. 망 Q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Q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앞으로 2010.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화천군은 1966. 11. 17.경 망 M와 사이에 위 토지를 ○ 공설시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용목적이 존속하는 한 임차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사용용도가 폐지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약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승낙 없이는 이 사건 토지의 원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나 전대, 지상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5) 이후 화천군과 망 M는 1987년 말경까지 2년 내지 3년마다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여러 차례 갱신하였다.

6) 한편, 1966. 12. 5.경 ○시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종전의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화천군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시장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위 시장건물을 매각하였고 그 건물의 소유권이 순차적으로 이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 G, J을 제외한 피고들 등이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7) 망 M 및 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은 위 시장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장상인들에게 화천군과 M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대지에 관한 차임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다.

8) 망 P, 원고 A, B(이하 '종전 소송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피고 D, F, H, I, S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0가합1273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 및 건물부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 10. 25.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1나7048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8. 26.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법원 2003다48846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1) 내지 7)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M와 화천군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시장상인들이 시장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망 M 및 위 원고들 등은 이 사건 토지가 시장부지로 사용되는 한위 임대차계약을 계속적으로 갱신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화천군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장상인들과 망 M 또는 위 원고들 등 사이에도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므로 위 종전 소송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장부지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앞서 본 판결들을 '종전

판결'이라 한다).

- 9) 종전 판결 이후 위 종전 소송 원고들은 춘천지방법원 2006가합340으로 망 H, S, 피고 D, F, I 등을 상대로 임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들에게 2004. 1. 1.부터 월 임료로 망 S은 236,000원, 망 H은 351,000원, 피고 D는 79,000원, 피고 F은 338,000원, 피고 I은 252,000원을 각 지급하되 피고 I이 공탁한 10,005,000원을 피고 I이 지급할 위 임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2006. 5. 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10) 피고 E은 종전 판결의 당사자인 망 S으로부터 2009. 7.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기초 사실 다항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화천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2, 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화천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건물들은 모두 시장 건물의 일부로서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어 왔고, 종전 판결 확정후 종전 소송 원고들이 피고 F, D, I 및 망 H, S등에게 월 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항 인정 사실 9)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피고 토지임차인들을 포함한 토지 임차인들로부터 임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화천군으로부터 위 시장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장상인들과 M및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들과 사이에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임료가 변동된 부분을 제외하고 화천군과 망 M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어 갱신되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위 시장건물에 포함된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인 피고 토지임차인들과 사이에도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 및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피고 G, J은 그 건물의 소유자인 F, I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토지임차인들 소유 건물부지는 1976년경부터 망 M와 화천군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들의 재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갱신의무가 없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또는 임대차기간의 제한을 초과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주장

원고들은 설사 피고 토지임차인들과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화천군이 아닌 시장상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은 갱신의무가 없는 임대차계약이고, 그 갱신 기간도 민법 제6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0년 또는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현재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므로 2014. 4. 28.자 준비서면으로 이를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의무가 없다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사실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인정 사실에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그 임대 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의 제한은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용도 폐지에 따른 해지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과 화천군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본 재산의 용도가 폐지되었을 때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화천군은 현재 위 시장에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있고, 적어도 현재에는 공설 시장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그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 상의 용도가 폐지되었을 때의 의미는 이 사건 토지가 더 이상 시장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화천군이 제3자에게 건물을 매각하는 등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건물이 더 이상 시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기타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기 이상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망 H을 포함한 피고 토지임차인들이 ① 과거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고, 과거에 2회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던 사실만으로도 원고들은 2기 이상 차임연체가 있음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2014. 3. 31.자 준비서면, 2014. 12. 30.자 당사자표시정정 및 준비서면 등으로 이를 해지하고, ② 또한 피고 토지임차인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공탁은 수령거절이 없는 상태에서 한 공탁으로 모두 부적법하므로 그 이후 앞서 본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③ 그 외에도 피고 D의 경우 2011. 12. 28. 해지 통지에 의해, 피고 E의 경우 2011. 10. 25. 해지 통지, 2012. 1. 8. 해지 통지, 2014. 4. 1. 해지 통지에 의해, 피고 F의 경우 2011. 12. 28. 해지 통지에 의해, 피고 U, V, W의 경우 망 H에 대한 2012. 1. 2. 해지 통지 및 2014. 1. 28. 해지 통지에 의해, 피고 I의 경우 2011. 12. 28. 해지통지에 의해 해지 통지가 도달할 무렵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모두 해지되었다.

2) 판단 가) 과거의 연체 사실에 근거한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과거에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연체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해지 의사표시 당시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화천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화천군과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방법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실제로 2011. 10.경까지는 매월 임차인들에게 구체적인 임료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명시한 청구서를 보내고, 영수증을 써주는 방법으로 임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 망 S, H 및 피고 D, F, I이 종전 소송의 원고들에게 일정액의 월 임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1) 앞서 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아울러 고려하면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은 위 화해권고결정 후에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인

원고들이 피고 토지임차인들에게 차임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 토지임차인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원고 B가 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한 차임을 원고들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인 2011. 2. 28.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F도 원고들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인 2011. 11. 14.까지 원고 B의 청구서에 따른 청구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리고 그 외에 피고 토지임차인들이나 망 H이 원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원고들로부터 청구를 받은 2기 이상의 연체차임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원고 B가 종래에 발송한 청구서의 내용처럼 월말에 각 차임채무의 이행기가 자동으로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피고 토지임차인들 또는 망 H에 의한 공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등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부정하였고, ② 종래에 임차인들에 의해 차임이 지급되던 우체국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였음에도, 그 밖에 지급방법을 안내하거나 청구서 등을 보내지도 아니하였으며, ③ 당심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원고들은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변제를 받지 아니하여 피고 토지임차인들 또는 망 H이 공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토지임차인들의 공탁은 유효하다. 그리고 갑 제12호증, 을 제2, 3, 4,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D의 경우 2011. 12. 27.경 2011. 12.분 차임을 지급하여 연체차임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B가 2011. 12. 28. 해지통지를 발송하였고, ② 피고 E의 경우에는 2011. 10. 27. 그때까지 밀린 2011. 8. 및 2011. 9.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해지통지는 2011. 10. 25. 발송되었으나, 그 기간의 차이가 2일에 불과하여 위 통지가 2010. 10. 27. 이전에 피고 E에게 도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12월 차임만이 연체된 상태에서 2012. 1. 8. 해지통지가 있었고, 2014. 4. 1. 해지 당시에는 공탁에 따라 연체 차임이 없었으며, ③ 피고 F의 경우에도 2011. 11. 14., 2011. 10. 차임을 지급하고, 2011. 11. 차임만이 연체된 상태에서 2011. 12. 28. 발송된 해지통지를 받았으며, ④ 망 H의 경우 2012. 1. 2.경에는 미지급

차임이 없었고, 2014. 2. 3., 2013. 11. 부터 2014. 1. 까지의 차임을 공탁하였는데, 2014. 2.3. 14:44 도달한 해지통지가 위 공탁보다 먼저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탁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⑤ 피고 I의 경우 2011. 12. 28. 해지통지 발송 당시 2011. 11.까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토지임차인들 또는 망 H에 대한 해지 통지 당시 2기 이상 차임 연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 G, J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D, E, F, U, V, W, I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한돈

판사정우용

판사이소진

별지

1) 소송상 화해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므로 화해권고결정 역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위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월 임료의 지급을 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